

제 정 안

2. 자격·학력·경력 및 교육지수의 세부항목별 배점 및 산식

가. 자격지수(40점 이내)

자격종목	배 점
기술사 / 건축사	40
기 사 / 기능장 / <u>산업안전지도사</u>	30
산업기사	20
기능사	15
기 타	10

수 정 안

2. 자격·학력·경력 및 교육지수의 세부항목별 배점 및 산식

가. 자격지수(40점 이내)

자격종목	배 점
기술사 / 건축사 / <u>산업안전지도사</u>	40
기 사 / 기능장 / <u>산업안전지도사</u>	30
산업기사	20
기능사	15
기 타	10

사 유

□ 산업안전지도사 자격시험·등록 여건, 업무 범위 및 수준을 고려하여 기술사/건축사와 동등 이상 수준 자격지수 적용 필요

1. 산업안전지도사 자격 여건

- 산업안전지도사는 3차 시험까지 분류되어 있음
- 1차의 경우 응시자격 제한이 없음, 2차의 경우 1차 합격자 또는 관련분야 기술자 자격 취득자, 보건지고사의 경우 의사 등에 한해 면제되고 있는 것은 이미 기술, 경력에 대한 부분을 반영하여 자격조건이 설정된 것으로 보아야 함
- 따라서, **2차 자격시험 면제 조건이 기술사임에도 자격지수 인정은 기사 수준으로 하는 것은 부적절함**

2. 산업안전지도사 등록 여건

- 산업안전지도사는 자격 취득 후 관련분야 전문교육을 수료하거나 관련분야 5년 이상 업무경력이 있어야 함
- 기사자격의 경우 학사기준 대학교 졸업예정자가 취득 가능한 자격조건으로,
- 산업안전지도사는 등록한 후 사용이 가능한 자격으로 5년 경력 또는 그에 준하는 경력이 있음에도 자격지수에서 기사 **기사 수준으로 안정화하는 것은 산업안전지도사의 경력 불인정되는 것과 같아 적절치 않음**

3. 산업안전지도사 업무범위 및 수준

- **산업안전보건법 제 27조 제1항 및 동법 별표 7의 안전관리전문기과 인력기준에서는 이미 산업안전지도사와 기술사를 동등·유사 자격기준으로 제정**하였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설기술인 자격인정 범위에 산업안전지도사가 기사의 자격지수와 같다는 것은 불합리함
-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의 업무범위인 위험성평가 지도,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등이 기사 수준의 업무사항이 아님**을 고려하여야 함

□ 위와 같은 사유로 산업안전지도사 자격지수 변경 적용에 대하여 의견 조회하오니 관련 부처(고용노동부)와 국내 산업안전관리 현황, 지도사 업무영역 등을 면밀히 검토 후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